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737

2009. 4.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4. 8. 광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9. 4.23.

다. 상정일자 : 2009. 4.24

2. 개정사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규정을 일치시키고, 미비한 일부 재활용업무의 추진근거를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적효력을 확고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제2조의2)

나. 과태료 부과 절차 개정 (제7조 제2항)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제7조 제4항, 별표1)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번에 개정하는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 O 안제2조의 2(재활용 센터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법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광진구 재활용센터를 운영중이며 위치는 광진구 자양동 612-44외1필지 면적은 375.9㎡(건물 197㎡) 이며, 위탁자는 김진광이고 위탁기간은 2007.3.1~2010.2.28입니다.

O 제7조 제2항 내용중 7일 이내를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개정,

또한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법 제9조 제1항(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법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제2항 및 제3항, 법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항, 법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3항의 규정 위반자및 법 제9조 제3항,법 제12조의 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1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가 개정되어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센터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제41조(과태료)에 따른 부과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안제2조의 2에서 센타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근거는 신설되었으나.

위탁자 선정 방법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3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중구, 송파구,강동구 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중.

또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후 6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따른 설치 및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부칙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 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 반대토론: 없음

○ 찬성토론: 없음

7.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수정내용〕

- 제2조의2 제3항 민간위탁운영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와
 - 부칙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 하여 수정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 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1항의	제2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 설>	③ 제②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시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이조례 시행후 60일이내에 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설치 및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